

WTO 보조금 분쟁을 대비한 수출신용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오 원 석*
김 필 준**
백 승 택***

I. 서 론

II. WTO 보조금 협정과 수출신용과의 관계

III. 수출신용관련 WTO 국내 분쟁 사례

IV. 결 론

주제어 : WTO 보조금협정, 수출신용, 수출보조금

I. 서 론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통상에 관한 글로벌 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2013년 2월 현재 15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저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숭실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있다.¹⁾ WTO는 출범 이래 수많은 분쟁 해결을 통하여 각국이 시행중인 무역 정책수단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수출신용²⁾은 WTO 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수단의 하나이며, 세계 각국은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을 통해 다양한 수출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수출신용시장 규모는 1.8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규모의 10%이상을 차지하였으며³⁾,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의 2012년 인수실적은 201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WTO에서는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WTO 보조금협정(ASCM)⁴⁾에 근거하여 해당 수출신용제도가 금지보조금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출신용 관련 WTO 분쟁 사례는 1996년 캐나다-브라질 항공기 사건이 시초이다. 이후 양국은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수출과 관련한 수출신용이 금지 보조금인지 다투었다.⁵⁾ 우리나라도 2002년 EC⁶⁾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K-SURE의 수출보험지원을 문제 삼은 사례와, 2004년 조선업체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K-EXIM')의 선수금환급보증 및 제작금융을 문제 삼은 사례 등이 있다. 2012년에는 WTO 제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K-SURE의 수출보험 지원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서 상계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진 사례

1)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2013.2.18자 12:55 방문)

2) 상품과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공적수출지원제도로써 직접대출과 보험·보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수출보험공사, 「Export Credit Terms Handbook」, 2007, 114-116면).

3) <http://www.berneunion.org/pdf/2012%20BU%20Press%20Release%202015%20OCT%202012.pdf> (2013.2.18.자 12:56 방문)

4) 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통상 'WTO 보조금협정'이라 부르며 정확한 명칭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이다.

5) WTO 패널은 캐나다의 항공기 관련 수출신용이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고,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수출실행에 따른 지원'이 인정되므로 캐나다의 지원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유럽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http://terms.naver.com>).

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출신용제도가 WTO 보조금협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수출신용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규범인 WTO 보조금협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출신용제도를 운영하다가 규제대상보조금으로 판정되면 수출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 대상이 됨으로써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 분쟁 사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김지용(2007)은 조선 및 반도체의 보조금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WTO 보조금협정 위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박광서·노승혁(2002)⁸⁾과 이종원(2003)⁹⁾은 조선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수출보조금 분쟁과 관련한 국가와 기업차원의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분쟁 대상 보조금을 포괄하여 WTO 보조금협정 위배 여부를 주로 다루었고, 보조금 중에서 수출신용분야에만 특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신용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의 WTO 보조금분쟁 사례의 쟁점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제도가 WTO에서 규제대상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격상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한다.

II. WTO 보조금 협정과 수출신용과의 관계

1. WTO 보조금 협정 개요

7) 김지용, “WTO 보조금 협정하의 분쟁사례 연구 - 조선 및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조금 분쟁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9권(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160면.

8) 박광서·노승혁,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통상마찰 배경과 협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한국무역학회, 2002), 424면.

9) 이종원,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 EU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8권(한국무역학회, 2003), 100-102면.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분류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규제와 상계조치라는 강력한 국제규범의 틀을 갖추고 있다. 보조금협정 제1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¹⁰⁾ GATT 제16조¹¹⁾에 명시된 가격 또는 소득지지¹²⁾가 있고, 그로 인해 혜택(benefit)이 부여되는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를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보조금이 존재하는 첫 번째 요건인 재정적 기여는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조치와 관련되는데, WTO 보조금협정 제1조 1항에서 정부조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자금의 직접 이전 또는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잠재적 이전 둘째,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 셋째, 현물에 의한 재정적 가치의 기여 넷째, 정부의 기능을 민간 기관에서 대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간접적인 정부 조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¹⁴⁾ 보조금의 공여 주체에는 정부의 위임이나 지시를 받아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는 민간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아야 한다.¹⁵⁾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에 해당되려면 보조금의 수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야 한다.¹⁶⁾ WTO 패널은 재정적인 기여가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10) WTO 보조금협정 1.1(a)1 Definition of a Subsidy: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이하 생략

11) GATT 제16조(보조금) A절 보조금 일반 1항에서 “채약당사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자신의 영토로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도록 운영되는, 제반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가격지지(price support)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소득지지(income support)는 정부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보조를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한다.

13) 김지용, 전계논문, 454면.

14) 이환규,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미국헌법연구」 제21권(미국헌법학회, 2010), 160면.

15) 김은영, “분쟁해결 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관세학회지」 제12권 (한국관세학회, 2011), 352면.

제공되는 경우 혜택이 부여된다고 실시하고 있다.¹⁷⁾ 보조금협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혜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조금협정 제14조는 a) 민간투자자의 통상적인 투자관행과 불일치하는 정부의 지분출자, b) 당해 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유리한 금리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출, c) 당해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대출보증, d) 적절한 수준에 맞지 않는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가 있을 때 혜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¹⁸⁾

WTO 보조금협정 제2조¹⁹⁾는 제1조의 보조금 정의조항에 의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정성 있는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되며,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 없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특정성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한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WTO 보조금협정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및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의 및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수출실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수입대체보조금(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정의된다. 금지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존재 그 자체로서 특정성이 인정되고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조치가능보조금은 그 자체가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침해,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과 같은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

16) 이환규, 전계논문, 186면.

17)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 2007, 143면.

18) 김은영, 전계논문, 352면.

19) WTO 보조금 협정 2.3(Specificity)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재를 받게 된다.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어 당연히 허용되는 보조금과 특정성은 있으나 정책적인 성격상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예 :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개선 보조금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⁰⁾

2. WTO 보조금 협정에서 수출신용 관련조항

WTO 보조금협정 제3조는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보조금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는 수출보조금 예시목록²¹⁾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12개 항목(a항부터 l항)을 열거하고 있다. 동 예시목록은 수출 실행에 따른 직접보조금, 운송보조금, 수출용 원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특혜제공, 수출과 관련한 세금감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과다환급, 수입과징금의 과다환급 등 10개 항목과 함께 수출신용과 관련된 2개 조항(j항 및 k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 예시목록은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수출보조금의 예시목록으로서, 이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조금 해당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²²⁾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은 수출신용에 관련한 금지보조금 예시항목으로 '장기적인 운영비용 및 손실을 보전하기에 불충분한 비율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신용보증보험제도, 수출상품의 비용 상승 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보험·보증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신용 위험요율은 장기 영업비용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²³⁾ 한편 부속서 k항은 수출신용 대출이자율에 관련된 금지보조금의 예시항목으로 k-1조항과 k-2조항으로 되어 있다. k-1조항은 '수출신용조건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material advantage)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부가

20) 한시적 허용보조금이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연장되지 못함에 따라 2000년 1월 1일에 그 적용이 만료되어, 현재는 '특정성' 없는 보조금만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21) Annex I.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22) 한국무역보험공사, 「OECD 수출신용정책」, 2011, 61면.

23) 신종원, "수출신용협약 개정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OECD FOCUS」 제2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92면.

제공하는 수출신용, 또는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신용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을 금지보조금으로 정하고 있다. k-2조항은 k-1조항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한 것(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에서 'Safe Heaven'조항이라고 함)으로서 공적수출신용을 지원할 때 OECD 수출신용협약의 이자율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금지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k-2조항은 OECD 수출신용협약과 WTO 보조금협정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수출신용제도가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려면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 협정 본문 제1조(보조금의 정의), 본문 제2조(특정성)의 순서로 협정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j항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부르는데, 분쟁 대상이 된 수출신용제도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않으려면 중장기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j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출신용제도는 재정적 기여나 혜택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된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특정 수출지원제도가 동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수출신용제도가 j항을 충족시키면 금지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역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j항을 충족하더라도 본문 제1조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그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제1조에 의해 보조금에 해당하더라도 제2조에 의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하게 된다. 특정성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적 기여가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3. 수출신용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DSU')²⁵⁾에 근거하여 회원국 간의 통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²⁶⁾ DSU가 인정하고 있는 분

24) 백승택, "WTO ASCM(보조금협정)과 수출보험", 「무역보험」 제177호(한국무역보험공사, 2013), 32면.

25)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쟁해결 방식으로는 크게 주선, 조정, 중재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과 협의, 패널, 항소, 이행단계 같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 절차는 패널과 항소기구 보고서의 이행의 관리 및 감독 단계이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회원국의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관련 회원국이 그 조치를 해당 협정에 따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²⁷⁾

WTO 보조금협정 제4조는 금지보조금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대국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금지보조금으로 여겨지는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협의를 요청한다. 둘째, 협의요청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다. 셋째, 제소를 접수한 DSB는 패널(Panel)을 구성하여 금지보조금 여부를 판단하고, 패널구성 및 위임사항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해야 한다. 넷째, 패널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패소국에 대해 일정한 시한 내에 보조금의 철회를 권고한다. 다섯째, 패소국이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DSB앞으로 상소할 수 있다. 이때 상소기구는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금지보조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DSB는 제소국이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²⁸⁾

Ⅲ. 수출신용관련 WTO 국내 분쟁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WTO 제소로 갔던 분쟁이 두 건 있다. 하나는 2002년 미국, 일본, EC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본사가 해외지사 앞으로 수출을 하고 동 수출건의 은행 네고와 관련하여 K-SURE의 단기수출보험지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 EC가

26) 이길원, “WTO DSB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155면.

27) 박영기, 「글로벌통상환경」(한국학술정보, 2011), 212-213면.

28) 백승택, 전개논문, 32면.

K-EXIM의 선박관련 선수금환급보증(APRG: 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²⁹⁾ 및 제작금융(PSL: Pre-Shipment Loan)제도³⁰⁾를 규제대상보조금으로 문제 삼은 조선분쟁이다. 마지막으로, WTO 분쟁 절차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12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 가전수출 기업에 대한 K-SURE의 수출보험지원이 규제대상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던 냉장고 상계관세 사건이 있다. 본고에서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신용 제도를 규제대상보조금으로 문제 삼은 조선, 반도체, 냉장고 관련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한국-EC 조선분쟁

1) 배경 및 판정 요약

2002년 10월 EC집행위원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K-EXIM의 APRG 및 PSL 제도 등이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하였다.³¹⁾ 동 분쟁에서 WTO 패널은 K-EXIM의 APRG와 PSL은 제도 그 자체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 개별 지원건의 경우에는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본건은 우리나라 수출신용제도를 대상으로 처음 WTO 제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조금협정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k-1항의 역해석 허용 여부 및 수출신용의 정의에 관하여 WTO에서 평결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³²⁾

29) 환급보증이란, 보증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통상 매수인)가 기 지급된 선수금(기성대금 포함)의 상환을 청구하면, 선박수출계약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은행의 지급확약이다(김상만,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무역상무학회, 2012), 8면).

30) 제작자금이란 선박 수출과 관련하여 조선업체의 선박건조와 대금결제 간 시간 간격을 때 금융기관이 조선업체에 선박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제도이다.

31) 김규태, “한-EU간 조선분쟁 결과와 그 대응전략 - 수출보조금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통권 제77호(산업연구원, 2005), 47면.

32)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과 WTO 보조금」, 2006년, 69면.

2) 당사자별 주장

EC는 K-EXIM의 법적 체제(legal regime)가 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규정한 금지보조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없고, K-EXIM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혜택을 공여하지도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APRG와 PSL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EC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지원제도들이 표면상(prima facie) 금지보조금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의 역해석을 통해 Safe Have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3) 패널 판정³³⁾

K-EXIM의 '재정적 기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WTO 패널은 K-EXIM의 사업이 정부수입의 지출과 연관되므로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EC의 '혜택'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K-EXIM의 법률상 일부 조항들(예 : 비경쟁조항, 시장조건 감안 의무 부존재 조항, 정부의 자금지원 조항 등)만으로 동 기관의 법적 체제가 혜택을 공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제도 자체의 금지보조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EC는 K-EXIM의 APRG이 수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요율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WTO 패널은 행정법상의 기속행위³⁴⁾/재량행위³⁵⁾ 구별법을 적용하여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한편, 개별거래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C는 K-EXIM의 APRG 거래가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급되었으므로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WTO 패널은 EC가 제시한 시

33) WTO WT/DS273/R Korea - Measure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2005.

34)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없이 법률의 기계적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35) 재량행위란 관계 법률상 행정기관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는 행위를 말한다.

장기준(market benchmark)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혜택의 부여 여부를 검토한 후, j항의 역해석을 통한 안전보호망(Safe Heaven)의 수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장기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패널은 시중은행이 발급한 APRG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시장운영자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된 것이므로 시장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³⁶⁾ APRG 보증채무 이행시의 환전위험을 반영할 경우 외국은행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위험 스프레드가 보증요율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선업체 앞으로 제공된 KEXIM의 개별 APRG 거래 중에서, 적절한 시장기준에 비해 저율로 발급된 APRG 거래의 경우에는 혜택이 부여되었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보조금협정 예시항목 j항의 역해석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은 APRG 제도가 보조금협정 본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j항의 역해석을 통해 Safe Haven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j항이 '해당 수단이 수출보조금이 아니라거나 또는 동조항들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수단은 금지되지 아니 한다'는 적극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조금협정 제3조 본문 주석 5³⁷⁾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4) 시사점

조선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법적체제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 그 자체가 금지보조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수출신용 제도 그 자체가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지원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지원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 한, 수출신

36) APRG는 K-EXIM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국내외 민간금융기관들이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조선업체를 상대로 하여 운영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APRG의 보증요율은 조선업체와 금융기관간의 협상에 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37) WTO 보조금협정 본문 제3조 주석 5에서는 '부속서 I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수단은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제도 그 자체는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개별 거래별로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부여가 있고, 특정성이 존재하면 보조금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셋째,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에 대한 역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보존 가능 금리로 수출보증, 보험제도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³⁸⁾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사례

1) 배경 및 판정 요약

EC는 1997년 이후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한국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2003년 8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34.8%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³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은 '03.7월 EC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04년 1월 패널을 설치하고 최종보고서를 2005년 4월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에서 패널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K-SURE의 수출보험 지원을 수출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수출보험지원분에 대해 5.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⁴⁰⁾

2) 당사자별 주장

EC는 K-SURE가 수출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채권은행이 하이닉스의 본지사 D/A 금융한도를 증액하지 않았을 것이고, K-SURE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는 재정적 기여가 있고, 혜택이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은 K-SURE가 채권은행에 수출보험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정부가 채권은행에 하이닉스에 대한 D/A 추가 금융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혜택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 14조⁴¹⁾ (c)항을

38) 김승호, 「WTO통상분쟁 판례해설(2)」(법영사, 2007), 200면.

39) 당시 K-SURE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본지사간 D/A 거래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하였다. K-SURE가 제공하는 수출보험 증권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D/A 금융한도를 기존 U\$8억에서 U\$14억으로 증액할 수 있었다.

40) 백승택, 전제논문, 34면.

들어 혜택 여부를 입증하려면 정부 지급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와 그에 상응하는 상업은행의 대출이자 차이를 비교해야 하나 EC는 그 차이를 비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에 따라 하이닉스가 K-SURE에 지급한 보험료와 수출보험 프로그램의 장기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 차이를 검토해야 하나, EC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수출보험을 이용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하이닉스 채권단의 D/A 금융제공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대체이자율을 비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에 따른 적정 보험료의 검토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보험은 한국정부가 하이닉스를 위해 특별히 제공한 보증⁴²⁾이기 때문에, j항은 잘못 원용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3) 패널 판정⁴³⁾

패널은 K-SURE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고, 공사의 보험증권이 자금의 직접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출보험제공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혜택 존재 여부를 결정하면서,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만약 정부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수혜자의 입장에서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K-SURE가 제공하는 수출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널은 수출보험을 통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은행이 D/A 금융한도를 증액할 의사가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혜택을 받았다

41)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42) EC는 하이닉스의 본지사 D/A 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이 한국정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수출보험 지원은 K-SURE의 일반적인 수출보험 사업운영과는 방식을 달리하여 한국정부가 하이닉스를 위해 특별히 제공한 보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43) WTO WT/DS299/R EC - Countervailing Measure 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2005.

는 EC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정부 지급보증을 받은 대출의 이자와 그에 상응하는 상업은행의 대출 이자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EC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한편 한국의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에 따른 적정 보험료 검토 필요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j항은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지, 혜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⁴⁴⁾ 마지막으로 패널은 수출보험으로 지원하는 모든 거래는 수출거래이므로 보조금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수출조건성을 충족하며, 이 경우 보조금협정 2.3조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정하였다.

4) 시사점

하이닉스 사건의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수출보험이 규제 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수혜자가 혜택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혜택의 존재를 판정하는데 있어 WTO패널은 시장의 상황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확보가능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자에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K-SURE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이 시장에서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것은 만약 국내에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민간보험사가 있다면, K-SURE가 해당 민간보험사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조금 분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은 역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한국은 장기균형을 유지하도록 보험료를 징구하는 수출보험제도는 규제대상보조금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패널은 j항은 금지보조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지, 규제대상 보조금 구성요소인 혜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장기수지균형조건을 충족하는 수출보험 제도라 하더라도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성 요소인 재정적 기여, 혜택, 그리고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라도 규제대상보조금이 될

44) 반도체 분쟁 이전에 발생한 EC-한국 조선 분쟁에서 WTO 패널은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의 역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수 있다.⁴⁵⁾

3. 미국 상무부 냉장고 상계관세 사례

1) 배경 및 판정 요약

2010년 3월 미국 W사는 한국의 가전 3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미국 상무부에 요청하였다. K-SURE에서 한국의 가전 3사의 대미 냉장고 수출에 대해 지원한 단기수출보험⁴⁶⁾이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가전 3사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3월 한국 S사에 대하여 2.46%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였고, 이중 1.64%가 수출보험과 관련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2) 당사자 주장

이 사건에서 미국 W사는 K-SURE의 수출보험 프로그램이 보조금 요건(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적 기여 측면에서는 수출보험이 자금의 직접 이전을 포함하며, 혜택 측면에서는 중장기수지균형을 이룰 수 없는 보험료를 수취⁴⁷⁾하고 있으며, 특정성 측면에서는 공사의 지원거래는 수출거래이므로 보조금 협정 제3조(금지보조금)를 충족하며, 따라서 협정 제2조(특정성)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수출보험은 자금의 직접이전이 아니라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모든 수출보험 종목은 중장기적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⁴⁸⁾하기 때문에 혜택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업

45) 조선분쟁에서는 보조금 협정 부속서 j항에 명시되지 않은 수출신용제도인 APRG와 PSL에 대하여 역해석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에서는 j항에 명시된 수출신용제도인 단기수출보험에 대해서도 역해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46)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단기수출보험은 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 본지사의 D/A거래를 원활하게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 성격의 보험이었으나, 세탁기 상계관세 사건에서는 순수하게 대금미결제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이 문제가 되었다.

47) 하이닉스 사건에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해 하이닉스에 대한 D/A 금융이 공여된 것을 혜택으로 보았으나, 세탁기 상계관세 사건에는 한국 가전 수출기업들이 장기수지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보험료를 적용받은 것을 혜택으로 보았다.

종이나 기업규모 등의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출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명시된 내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액을 결정하고 있어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미국 상무부 판정⁴⁹⁾

미국 상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조사대상기간(Period of Investigation; POI)으로 설정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3월 한국 S사에 대하여 2.46%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이중 단기수출보험 해당 부분은 1.64%에 달한다. 최근 5년간 K-SURE의 단기수출보험제도가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⁵⁰⁾

4) 시사점

이 사건에서 K-SURE의 단기수출보험제도가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쟁점이 된 것은 장기수지균형 달성여부였다. 장기수지균형 문제는 2003년 브라질-미국 면화 분쟁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 당시 패널은 장기(long-term)를 ‘해당제도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느 특정시점의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경험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실증적인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장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장기수지균형을 평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5년이 수출보험 제도에 대해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48) 실제로 본 사건의 제소 대상이 된 한국의 가전 3사들이 K-SURE에 2008년까지 납부했던 보험료 및 회수금의 누적금액은 지급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였다.

49) U.S. Department of Commerce, C-580-866 Investigation 1/1/10-12/31/10, 2012.

50)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은 2012년 4월 미국 ITC(무역위원회)의 판정에서 다시 뒤집혔다. ITC가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기각한 것이다. ITC는 한국 가전 3사가 한국정부에서 보조금 수혜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관련 산업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기간이냐는 것이고 둘째, 그 기간 중에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경험이 발생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기간(2006년-2010년)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전 세계 수출신용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사실은 패널 판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WTO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인 미국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WTO 보조금 분쟁 시 비슷한 기준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IV. 결 론

앞에서 언급된 수출신용에 관련된 WTO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수출기관이 수출신용 제공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출신용의 규제대상보조금 여부 구성요소는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이지만, 사례를 통해 수출신용은 재정적 기여와 특정성을 구성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수출신용제도에 있어서는, 혜택의 유무가 WTO의 규제대상 보조금이나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 ‘혜택’의 존재 판정과 관련하여 WTO 패널은 ‘시장의 상황’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확보가능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자에게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을 어떠한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아직 없다. 개별적인 분쟁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혜택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위 그 자체가 금지보조금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충분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EC-한국 조선 분쟁에서 EC는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기 용이한 형태로 고안되어 있는 K-EXIM의 법적 체제 자체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공적수출기관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 그 자체가 보조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은 역해석을 통해 특정 지원조치가 규제대상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장기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징구하는 수출신용제도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보조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장기수지균형은 수출신용제도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않을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신용프로그램이 장기수지균형을 달성하더라도 재정적 기여와 혜택이 있고, 특정성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넷째, 보조금협정 부속서 j항에 기초한 금지보조금 판정을 위해서는 과거실적의 보험료 장기수지균형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 제도의 구조 및 설계 등도 검토해야 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 수출신용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과거 실적상의 장기적인 수지균형 측면뿐만 아니라, 수지균형의 관점에 기초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요율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 한, 수출지원 제도 자체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수출신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j항에 규정된 수출신용제도 이외의 보험 및 보증 제도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한, 제도 그 자체가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개별거래건별로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부여가 있고,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규태, “한-EU간 조선분쟁 결과와 그 대응전략 -수출보조금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통권 제77호, 산업연구원, 2005.
- 김상만, “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무역상무학회, 2012.
- 김은영, “분쟁해결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관세학회지」 제 12 권, 한국관세학회, 2011.
- 김승호, 「WTO통상분쟁 판례해설(2)」, 법영사, 2007.
- 박광서·노승혁,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통상마찰 배경과 협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한국무역학회, 2002.
- 박영기, 「글로벌통상환경」, 한국학술정보, 2011.
-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 2007.
- 백승택, “WTO ASCM(보조금협정)과 수출보험”, 「무역보험」 제177호, 한국 무역보험공사, 2013.
- 이종원,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 EU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8권, 한국무역학회, 2003.
- 이길원, “WTO DSB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 「국제경제법연구」 제 9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 이환규,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미국헌법연구」 제21권, 미국 헌법학회, 2010.
- 신종원, “수출신용협약 개정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OECD FOCUS」 제2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과 WTO 보조금」, 2006.
- WTO WT/DS273/R Korea - Measure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2005.
- WTO WT/DS299/R EC - Countervailing Measure 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2005.
- U.S. Department of Commerce, C-580-866 Investigation 1/1/10-12/31/10.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olicy preparing for possible WTO ASCM Disputes

Oh, Won Suk
Kim, Pil Joon
Baek, Seung Taek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be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Key Words : WTO ASCM, Export Credit, Export Subsidy,